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455

발의연월일: 2025. 1. 13.

발 의 자:김문수·주철현·채현일

박지원・박해철・김 윤

권향엽 · 이광희 · 조계원

허성무 • 박희승 • 김우영

신정훈 • 민홍철 • 강준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의 취업,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져 청년정책의 수요대 상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청년을 규정하는 연령이 상향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만 청년을 정의하는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여 사회변 화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본문 중 "34세"를 "39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의 연령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년에 대한 연령을 적용한다.

- 1. 이 법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9세 이상 35세 이하
- 2.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9세 이상 36세 이하
- 3.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9세 이상 37세 이하
- 4.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19세 이상 38세 이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u>34세</u>	1 <u>39세</u>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